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대화법 ② 부모 자녀 살리는 존중 대화법
12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소송구조 사건 분석 ②
22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㉞
24 • 가정폭력상담실
26 • 어떻게 할까요
28 • 결혼과 인생(217) 영화 이야기
어미 _ 김용언
30 • 실습소감문
32 • 좋은 책
파친코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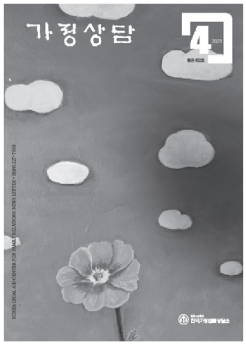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맑은 하늘〉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1. 4.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이 달의 메시지

생명의 근원으로써 가정을 생각하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나 앞뒤 가리지 않고 아이를 구합니다. 아이의 부모와 친분이 있거나,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했으며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한 가지라고 불렀습니다. 약하고 어린 것을 살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또 지금까지 세대를 이어 생명이 존속되도록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길고양이 어미는 어쩌다 먹이가 생기면 아기 고양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아기들을 지키느라 제 고픈 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길 위의 동물들이 이러할진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 약하고 어린 생명을 먼저 돌보는 마음. 이런 측은지심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는 불행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혹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는 물론 부모라는 이름 아래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해 험한 세상에 자녀들만 남겨둘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이고,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는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자녀의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다른 면에서의 학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부부로써의 삶을 끝냈다고 부모로써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경우도 자녀에 대한 유기와 방임이고 학대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주 특별하고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비극이라고 봅니다.

상담소는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루고 있는 가정문제 전문기관으로써 일찍부터 부부의 이혼 그리고 비혼가정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상담소 역사 초기부터 가족구성원들이 가진 각각의 문제를 살펴 왔으며 특히 양육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는 2001년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혼가정의 양육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은 물론 제대로 된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으며 이것이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뿐 만 아니라 상담소는 입양과 자녀복리,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 친권법, 비혼가정의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면서 법제화는 물론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상담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증가추세에 있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동학대, 가족 전체의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사회의 현실을 보노라니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갈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물을 수 없다고 변명하기 전에 과연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또한 가족 담당 부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비극과 아픔에 분노하고 한탄하기에 앞서,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교육을 상담소가 다시 시작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혼인관계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돌아서면 타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부자, 부녀 혹은 모자, 모녀로서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특히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 부모는 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인 가정을 지키고 사회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특집 ❶

대화법 - 비폭력대화 동영상에서* ②

꽃보다 대화 <2편>

부모 자녀 살리는 존중 대화법

전문가 내레이션 :

김 병 후 원장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본소 이사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마음 같지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자녀는 마음을 닫고 대화를 거부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부모 자녀 간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모욕적인 말이나 욕 등 정서적 폭력을 수반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하는 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5년-2019년 가정폭력상담통계]

전체 폭력사건 중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점차 증가

2015년 12.7%, 2016년 19.9%, 2017년 18.8%, 2018년 11.8%, 2019년 9.2%

[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 신체적 학대 11.3%, 정서적 폭력 24%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 받는 부모와 자녀 모두,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 받지 않으면서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높습

---

* 편집자 주) 본소는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대화법 교육 동영상을 기획, 제작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여 서동일 감독에 의해 11월에 제작 완료되었으며,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요약본을 제작하여 본소 유튜브를 통해 널리 제공하고 있다. 이 대화법은 비단 가정폭력 관련자들 뿐 아니라 갈등상황에 놓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비폭력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고는 동영상의 시나리오를 읽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지난 2월호에 부부 간 대화법을 게재한데 이어 이번 호에는 부모 자녀 간 대화법을 싣는다.

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상처 주는 대화 대신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1. 사례 :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존중과 협력대화법

"퇴근하고 집에 온 엄마가 딸의 방문을 열었는데 딸이 교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 **엄마** (딸 방문 열며 소리친다) 야!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야? 저녁마다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도 짜증난다.
- **딸**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내 방에서 나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 **엄마** 알아서 하는 게 그거냐? 맨날 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면서… 숙제 안 할 거야?
- **딸** 싫어! 엄마 일이나 해! 신경 끄라고! (이불 뒤집어쓰고 누워버리는)
- **엄마** 으이구, 내가 못 살겠다. (문 쾅 닫고 나가는)

"아주 흔한 상황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중요한 욕구는 존중과 협력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녀한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표현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부모 자녀 간에도 협력하며 '존중하는 대화'를 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오랜 기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서 갈등상황에서 '비폭력대화' 훈련을 한 것이 가족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 는 타인과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으로,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고안하였다.

부모 자녀 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법, 비폭력대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대화법 훈련

"조금 전 사례에서 엄마가 딸에게 비폭력 대화로 말하려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1-1 사례 : 자녀와 상호존중과 협력 관계를 맺는 엄마의 비폭력대화법

[관찰] • **엄마** (딸 방문 열며 딸과 방을 둘러본다)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은 교복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네.

[느낌] 엄마는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욕구] 엄마는 일상적인 일들이 순조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도 안심이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그리고 네 공부나 숙제도 잘 챙겨주고 싶어.

[부탁] 네가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엄마와 얘기도 하면서 충분히 쉬었으면 해. 엄마 말이 어때?

• **딸** … (일어나며) 교복부터 갈아입고 숙제할게요.

"부모가 자녀와 맺어야 할 협력관계는 자녀에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자녀와 함께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비폭력대화로 말을 했는데, 아이가 싫어! 라고 말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싫어' 라고 말할 때는 자녀가 어떤 욕구 때문에 그랬는지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표현해준다면 대화의 물꼬를 트고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엄마의 말을 거부한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1-2 사례 : 사춘기 자녀의 마음

[느낌] [욕구] • **딸** 엄마, 저는 피곤하고, 성가시고, 화가 나요. 좀 더 쉬고 싶어요. [재미, 즐거움] 엄마가 혼내지 않기를 바라요. [안전, 편안, 이해 받고 싶음]

"엄마가 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면 자녀의 도전과 행동도 이해할 수 있고, 자녀의 말을 들어 주는 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비폭력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1-3 사례 : 사춘기 자녀가 싫다고 할 때 엄마의 비폭력대화법

- **엄마** 엄마는 네가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엄마와 얘기도 하면서 충분히 쉬었으면 좋겠어. 엄마 말이 어때?
- **딸** 지금 숙제하기 싫어!
- **엄마** 많이 피곤하니? 좀 쉬고 싶어? 숙제는 네가 알아서 한다는걸 엄마가 믿어줬으면 하는 거야?
- **딸** … 응.

"엄마가 비폭력대화로 딸의 말을 공감으로 들어주면 딸은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1-4 사례 : 자녀에게 잘 부탁하는 법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탁 대신에 강요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절 당할까봐 혹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요. 부탁을 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탁할 때는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 **엄마** "학교 가서 잘해."
  "뭘 잘하라는 건지 막연하죠?"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께 안녕하세요라고 말해."
  "네. 훨씬 구체적입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부탁합니다."

- **딸** "엄마, 저 보리밥 먹기 싫어요."
  "이렇게 싫다는 부정적 표현 대신에"

  "엄마, 저 돈까스 먹고 싶어요."
  "긍정적 표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 권유나 질문 형태로 부탁합니다."

- **엄마** "물 한 컵만 가져 와."
  "이렇게 명령하는 대신에"

  "물 한 컵만 갖다 줄 수 있을까?"
  "권유나 질문 형태로 부탁합니다."

"넷째, 욕구에 기반해 부탁 합니다."

- **엄마** "네 방 좀 치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깨끗한 방에서 지내면 엄마 마음도 편안하고 안정될 거 같아. 네 방을 지금 좀 치워줄래?
  "이렇게 엄마의 욕구에 기반해 권유로 부탁합니다."

"다섯째, 부탁한 후에 연결 부탁을 합니다."

- **엄마** "너는 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연결부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정리

"그런데 부모가 부탁을 해도 들어줄지 말지의 여부는 언제나 자녀에게 달려있습니다. 부탁은 강요가 되면 안 되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만약 거절하면 비난이나 처벌을 할 것이라는 암시적인 말과 표정을 해도 안 되죠. 강요는 거부감과 반발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 해도 화를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하려고 한다면 자녀도 같은 방법으로 부모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존중하는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2. 성인 자녀와의 존중대화법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받지 못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슬픔 또한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세대가 다른 성인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습니다. 존중의 대화법으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 사례

● **어머니** 아들이 최근에 이사를 갔어요. 아들 사는 것도 보고 싶고 김치 담근 것도 갖다 주러 갔더니, 예전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 번호가 바뀌었어요. 아주 당혹스럽고 서운해서 상처받았어요.

"네. 상처받고 마음이 서운하다면 바로 그때 풀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이가 더 나빠져서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몹시 갈등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싶을 때에도 비폭력대화 4단계를 쓰면 효과적입니다."

2-1 사례 : 성인 자녀와의 비폭력대화법

(어머니, 전화기 들고 아들과 통화 중)

[관찰] ● **어머니** 아범아. 너희가 새로 이사 간 집도 구경하고 김치도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현관비밀번호가 예전에 알던 번호가 아니더구나.

[느낌] 내가 아주 당혹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욕구] 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존중을 받고 싶단다. 그리고 너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도 되고,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구나.

[부탁] 내 말 들어보니 네 생각은 어떠니?

● **아들** 비밀번호 바꾼 거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직장도 바뀌고 집도 이사 정리가 안 되어서 정신없어 연락을 못 드렸네요.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비폭력대화 4단계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연결 부탁'을 잘 하셨죠? 자신의 말을 한 후에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내 말이 어떻게 들려?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런 말이 연결 부탁입니다. 기존 대화방식에 연결부탁만 잘 붙여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연결 부탁만 붙여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2-2 사례 : 후회에서 배우고 용서하기

"방금 사례는 모자간에 오해를 풀고 화해했지만 어떤 일로 인해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나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가 될 때 해결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비폭력대화의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 **어머니**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니 제가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이 안 낳을

거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명절에 정말 집에 안왔더라구요. 며느리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이 절대 가지 말자고 해서 못 왔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거 같아요. 먼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게 하는 내 안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먼저, 어머니의 느낌은 어떨까요?"

- **어머니**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명절에 안와서 섭섭했다. 하지 만 네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니까, 더 나이가 들면 아이 낳기가 힘들 텐데 걱정이 되고,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친구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도 든단다.

"그러셨군요. 그럼 어머니가 이런 느낌이 드는 숨겨진 욕구는 뭘까요?"

- **어머니** 아무래도 자식이 있으면 너희 결혼생활이 안정될 것 같고, 그러면 부모로서 안심도 될 것 같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도 성장하고 보람을 얻는 건데 내 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나도 손주 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고, 너 키울 땐 사느라고 바빠서 못해줬던 것을 해주고 싶어.

"어머니의 솔직한 욕구를 아들이 듣는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욕구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아들**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고 바라시는지 몰랐어요. 요즘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부모가 된다는 게 겁이 나요. 하지만 아이 낳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다음 주에 뵈러 가겠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긍정적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이해, 수용적인 말은 천 냥 빚을 갚을 만큼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2-3 사례 : 일상의 존중대화법, 감사와 장점 찾기

"가족이라 편하다는 이유로, 또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처회복이 잘 안 되지요. 부모 자녀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존중하는 대화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는 감사하기와 장점 찾기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 : 감사하기, 장점 찾기]

"시골집에 사시는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절약한다고 보일러를 자꾸 끄셔서 아들이 걱정이 많나 봅니다."

- **아들** 어머니, 좀 따뜻하게 지내시게 보일러 좀 켜세요.
- **어머니** 기름 값이 얼마나 비싼데 자주 틀어. 아주 추운 날 아니면 안 튼다.
- **아들** 그러다 감기 걸리시면 약값이 더 들어요.
- **어머니** 너희들도 힘들 텐데 용돈 주는 거 아껴 써야지.

"보일러는 수단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잘 돌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돌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꼭 보일러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온수매트를 사드려도 되고,용돈을 올려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보일러 끄는 일로 아들과 실랑이하고 있지만 그 밑의 욕구는 절약, 경제적 안정, 아들에게 부담을 덜 지우고 싶다는 배려와, 돈 아껴서 아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삶에 대해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 : 감사하기, 장점 찾기]

2-4 사례 : 감사와 장점 찾는 존중대화법

- **어머니** 너희들도 힘들 텐데 용돈 주는 거 아껴 써야지.
- **아들**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오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클 수 있었네요. [고마운 점 찾아보기]
- **어머니** 그렇지.
- **아들** 경제적으로 부담 안 주려는 어머니께 감사해요.[감사] 이번 겨울에는 전기료 적게 나오는 온수매트 해 드릴게요.
- **어머니** 그래, 내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감사]

"가족 간에는 감사와 인정이 익숙지 않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기여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서 사랑, 감사, 존중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존중대화법을 잘 하는 법,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 **딸** 우리 가정 지키는 존중대화법
  첫째, 긍정문으로 표현하기!
- **엄마** "딸, 휴일에 서점에 갈까?"
- **딸** "싫어!" 가 아니고, "엄마, 나는 집에서 쉬고 싶어."

- **어머니** 우리 가정 지키는 존중대화법
  둘째, 내면의 소리 듣기!
  (옆에 앉은 아들 손잡고)
  "아들. 엄마는 너에게 가급적 부담 안주고 살고 싶어."
- **아들** 우리 가정 지키는 존중대화법
  셋째, 해법보다 공감이 먼저!
  (옆의 어머니 손 잡고)
  "어머니. 보일러를 안 켜는 이유가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 안주려는 마음이셨다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는 보일러 대신 따뜻하게 겨울 보내실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꽃보다 더 예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상처를 주는 대화 대신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대화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소, 2007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 사업’ 특화하여 진행

2015년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수탁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소송구조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그동안 상담을 통하여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2001년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육비 관련 실태 및 의식조사였으며 본소는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관련 심포지엄과 강연회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의 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양육비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2009년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된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본소는 현재까지도 사회변화에 맞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본소는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특화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후 현재까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수탁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2007년 89건을 시작으로 2015년 151건, 2016년 124건, 2017년 110건, 2018년 91건, 2019년 100건, 2020년 15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문제 등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2020년 신청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총 151건을 분석하였다.

Ⅰ. 소송구조 대상

1. 가족형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한부모가족 즉 모자가족, 부

자가족, 비혼모가족, 비혼부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의 소송구조 신청을 살펴보면 모자가족의 소송구조가 75.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의 소송구조 20.5%, 비혼모가족의 소송구조는 3.9%를 차지했다. 부자가족 소송구조 중 부의 건강, 복역 등의 문제로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소송구조 신청을 대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양육자와 재혼하여 자녀들을 입양한 배우자가 양육자의 사망으로 비양육자에게 미지급되었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표 1〉 가족 형태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모자가족	114	75.6
부자가족	31	20.5
비혼모가족	6	3.9
비혼부가족	-	-
조손가족	-	-
합계	151	100

2. 연령 및 지역

1)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과 상대방의 연령은 40대(신청인 49%, 상대방 51%)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0대(신청인 30.5%, 상대방 23.8%), 50대(신청인 13.2%, 15.9%), 20대(신청인 7.3%, 9.3%) 순으로 나타났다.

2) 자녀 연령

자녀의 연령은 자녀들이 8-13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85명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표 3〉 자녀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자녀 1	자녀 2	자녀3	자녀4
0-3세	8	2	-	-
4-7세	25	16	4	1
8-13세	50	29	6	-
14-16세	15	18	-	-
17-19세	28	12	1	-
20세 이상	25	5	-	-

3) 지역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9건, 경기 47건, 경상 37건, 전라 18건, 충청 18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50.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 지역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서울	29	19.2
경기	47	31.1
강원	2	1.4
충청	18	11.9
경상	37	24.5
전라	18	11.9
제주	-	-
전체	151	100

〈표 2〉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구분	사건 수	비율
신청인	20대	11	7.3	상대방	20대	14	9.3
	30대	46	30.5		30대	36	23.8
	40대	74	49		40대	77	51
	50대	20	13.2		50대	24	15.9
	합계	151	100		합계	151	100

Ⅱ.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양육비 소송구조는 크게 양육비 지급의무자와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2020년 양육비 청구 사건은 28건,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123건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151건 중 104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양육비 청구 16건, 양육비 이행확보 88건) 47건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조정·결정 87건, 취하 12건, 기각 0건, 각하 4건, 이송 1건으로 95.6%의 승소율[1]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본안 소송의 지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절차인 본안 외 소송을 차례로 지원함으로써 소송의 실효성과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표 5〉 소송구조 사건 유형별 현황

구분			사건 수	비율
양육비 청구	종결	승소 · 조정	15	9.9
		기각	–	–
		각하	–	–
		이송	–	–
		취하	1	0.7
	진행 중		12	7.9
	합계		28	18.5
양육비 이행확보	종결	결정	72	47.7
		기각	–	–
		각하	4	2.6
		이송	1	0.7
		취하	11	7.3
	진행 중		35	23.2
	합계		123	81.5
전체 합계			151	100

1. 양육비 청구 사건

1) 소송 추이

양육비 청구 소송은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151건 중 28건을 차지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51건 중 104건(68.7%)이었던 것이 2016년 99건 중 40건, 2017년 110건 중 59건, 2018년 91건 중 21건, 2019년 100건 중 27건이었다. 2015년의 경우 양육비 양육비 청구 사건이 68% 이상을 차지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전체 소송구조 사건의 18.5%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판결을 받게 된 양육자들이 증가한 점과 협의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 및 재판상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소송구조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 형태 및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2020년 진행된 28건의 사건은 인지 및 양육비 청구 2건, 양육비 청구(친권자 지정(변경), 양육비 변경, 응소 등 포함) 2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가족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가족 형태별 본안 소송 건수

(단위 : 건)

구분	인지 및 양육비청구	양육비 청구	합계
모자가족	1	20	21
부자가족	–	4	4
비혼모가족	1	2	3
비혼부가족	–	–	–
조손가족	–	–	–

1) 승소율:(승소·조정·결정)/(승소·조정·결정+기각+각하)

양육비 청구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 및 양육비 청구 2건, 친권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청구 7건, 양육비 청구 14건, 양육비 증액 청구 4건, 비양육자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한 응소 1건으로 총 28건이었다.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 간 관계를 살펴보면 비혼 관계 3건, 협의 이혼 부부 22건, 재판상 이혼 부부 3건 등이었다.

〈표 7〉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단위 : 건)

청구 유형	전체/당사자 관계	비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인지	2	1	1	–
친권자 지정(변경)	7	1	5	1
양육비	14	1	11	2
양육비 증액	4	–	4	–
양육비 감액 응소	1	–	1	–
합계	28	3	22	3

이처럼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았는데, 총 22건 사건들의 이혼 시기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 2009년 8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니 2009년 8월 이전은 8건, 2009년 8월 이후는 14건이었다. 해당 14건 중 양육비 감액 응소 1건과 양육비 증액 1건을 제외한 12건은 협의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양육자의 부담으로만 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양육비 지급을 위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당사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등 양육비부담조서가 양육자에게 불합리하고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혼 후부터 양육비 청구 전까지 발생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조차 없어 그 동안 경제적 고충이 발생했던 양육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3) 양육비 청구 형태 및 인정 금액

28건의 사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은 15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9건이었다.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4건이었다.

〈표 8〉 양육비 청구 형태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장래양육비 청구	15	8	7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9	6	3
과거양육비 청구	4	2	2
합계	28	16	12

종결된 사건 16건 중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이 8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6건,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2건이었다. 16건 중 15건의 사건이 승소, 조정의 결과를 냈으며 취하된 1건은 상대방의 협박으로 소송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종결된 16건 중 1건의 취하 사건을 제외한 15건의 청구 금액과 판결(조정)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래양육비는 13건에서 청구금액의 5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상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의 경우에는 8건 중 2건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9〉 양육비 청구 및 인정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장래청구금액	장래인정금액	과거청구금액	과거인정금액
장래양육비 청구	50	30	-	-
	45	35	-	-
	40	30	-	-
	50	25	-	-
	50	40	-	-
	50	25	-	-
	50	35	-	-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70	-	3,600	1,000[2)]
	95	75	750	750
	100	80	500	250
	80	50	14,560	3,000
	100	125	13,600	0
	100	50	7,200	3,000
과거양육비 청구	-	-	7,130	3,000
	-	-	19,250	5,500

< 사례 1 >
과거양육비보다 장래양육비에 대한 인정

청구인(여, 45세)과 상대방(남, 44세)은 2004년 협의 이혼하였고, 당시 자녀의 친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자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뇌병변 1급, 정신지체 1급의 심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고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16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병원비, 재활치료비, 기저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혼 후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녀의 과거양육비 19,500만원과 2034년 4월까지의 장래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자녀의 장래양육비로만 2020년 11월부터 2040년 12월까지 월 1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소송기간

양육비 청구 사건의 소송기간은 1-3개월 4건, 3-6개월 9건, 6개월-9개월은 3건으로 나타났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1) 소송 추이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2020년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 사건 151건 중 123건이었다. 소송구조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51건 중 47건(31.3%)이었던 것이 2016년 59건, 2017년 51건, 2018년 70건, 2019년 73건이었다가 2020년에는 123건이 진행되었다. 2015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과 비교하여 보면 31.3%만을 차지했던 사건이 점차 늘어 2020년에는 81.5%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의 대부분을

2) 과거 및 장래양육비로 합계 1,000만원 지급 조정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진행된 123건의 사건을 가족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모자가족의 신청이 93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자가족 27건(22%), 비혼모 가족 3건(2.4%)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 형태별 이행확보 사건 건수

(단위 : 건)

구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전체	93	27	3	-	-

2) 미지급 양육비 액수

소송구조 신청 당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액수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60건(48.8%)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구간 18건(14.6%),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구간 14건(11.4%), 3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 12건(9.8%),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11건(8.9%), 10,000만원 이상 7건(5.7%), 300만원 미만 1건(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양육비가 1,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96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미지급 양육비 액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300만원 미만	1	0.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2	9.8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4	11.4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0	48.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8	14.6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11	8.9
10,000만원 이상	7	5.7
합계	123	100

3) 이행확보 유형별 사건 내용

(1)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가) 사건 현황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주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거나 확실하지 않을 때 신청하게 되는 사건으로 2015년 28건, 2016년 33건, 2017년 37건, 2018년 43건, 2019년 39건이었고, 2020년에는 67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양육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7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행명령은 54건, 과태료 2건, 감치 11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이행명령 31건, 과태료 2건, 감치 7건이 종결되었다.

〈표 12〉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이행명령	54	31	23
과태료	2	2	-
감치	11	7	4
합계	67	40	27

(나) 결과 및 소송기간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명령 신청은 31건

중 21건이 결정을 받았고 취하 9건, 이송 1건으로 나타났다. 취하된 9건의 사건은 모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양육자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 후 이행을 약속한 경우였다. 한편 이행명령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감치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감치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21건의 이행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3〉 이행명령 종결사건 송달 결과

(단위 : 건)

구분	사건수
송달	13
송달간주	2
공시송달	6
합계	21

따라서 공시송달을 통하여 결정된 6건의 사건은 결정은 받았으나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행의무위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행명령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결정된 21건의 사건의 분할 지급 기간을 확인하여 보니 21건 중 19건은 3회부터 최고 5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것이 결정되었고,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것이 결정된 1건과 8년 동안 8회(1년에 1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것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2건의 사건 또한 양육비가 미지급되더라도 이행의무위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감치 신청은 7건 중 6건이 결정을 받았고 취하는 1건이었다. 과태료 신청 사건 2건은 모두 결정을 받았다. 감치와 과태료 신청 사건의 종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결정 받은 6건 중 1건은 결정된 후 양육비가 지급되어 해당 결정을 취소하였다. 취하된 1건은 송달불능으로 법원에서 취하를 권한 사례였다. 또한 감치를 신청했으나 과태료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과태료 신청 사건 중에는 피신청인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해당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유도하고 시간을 주었으나 결국 아무 것도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표 14〉 감치, 과태료 종결사건 내용

구분	종결 내용
감치 신청	과태료 50만원 결정
	감치 5일 결정
	결정 후 취소
	감치 30일 결정
	송달불능 취하
	감치 10일 결정
	감치 7일 결정
과태료 신청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30만원

< 사례 2 >
이행의무위반 신청이 어려운 이행명령 공시송달

신청인(남, 45세)은 피신청인(여, 34세)의 가출로 2016년 재판상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피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피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출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었고, 중풍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신청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조업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바로 퇴사하였고, 뒤이어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었다. 2020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이행명령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건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사례 3 >
감치 아닌 과태료 결정

신청인(남, 30세)과 피신청인(여, 28세)는 2011년 협의 이혼면서 피신청인이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이혼 직후부터 간헐적으로 약 7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미지급된 양육비는 2,500만 원이 넘게 되었고 이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연락을 피하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고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과태료 50만원 결정을 받게 되었다.

(2) 강제집행 등

(가) 직접지급명령 현황 및 결과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020년 직접지급명령은 6건 신청되었고, 4건은 결정이 되었으며 진행 중인 2건 중 1건은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결정된 4건 중 1건은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존재하여 결정에 실효성이 없는 사례였다. 또한 해당 4건은 모두 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졌다.

〈표 15〉 직접지급명령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직접지급명령	6	4	2

< 사례 4 >
압류 경합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직접지급명령

채권자(여, 44세)와 채무자(남, 40세)는 2019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3명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2019년 3월부터 자녀 1명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생활비, 양육비 마련을 위하여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으나 이를 홀로 부담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다. 이에 반해 채무자는 정부기관의 직원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정은 이루어졌으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최고 결과, 이미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강제집행 중 가장 잘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압류가 가능한 채권으로는 예금채권, 급여채권, 보험금채권, 카드사매출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다. 2020년 신청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31건으로 압류 대상을 살펴보면 급여채권 12건, 예금채권 17건, 보증금반환채권 2건으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건수가 높았다. 31건의 사건 중 29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종결된 사건은 모두 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졌다.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1건이 신청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표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1	29	2
부동산강제경매	1	-	1

(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권이 장래 강제집행 될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사건도 2020년 소송구조 사건에 신청되었다. 부동산가압류 2건, 채권가압류 1건이 진행되었으며 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2건은 과거양육비에 대한 보전, 1건은 장래양육비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

〈표 17〉 가압류 사건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부동산가압류	2	2	-
채권가압류	1	1	-

(라) 재산명시, 재산조회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다. 재산명시는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명시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절차에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비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가 있다. 2020년 소송구조 사건 중 재산명시 7건, 재산조회 1건이 신청되었고, 5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4건의 재산명시 사건은 모두 송달의 문제로 각하 결정을 받아 재산조회 진행을 준비 중이다. 종결된 1건의 재산조회 사건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어떤 재산도 발견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표 18〉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재산명시	7	4	3
재산조회	1	1	-

(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현황 및 결과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소송구조 사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2020년 소송구조 사건 중 7건이 신청, 종결되었고 7건 중 1건은 양육비가 지급되어 사건은 취하되었다.

〈표 1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7	7	-

Ⅲ. 소결

소송구조를 신청한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이에 더하여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는 위협받고 있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는 일은 한부모가족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안은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1년 7월 13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송구조 진행 중 드러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이행명령부터 감치 신청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행명령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치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수단을 통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행명령이 결정된 후 해당 명령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치가 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법원이 3기 이상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는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한 감치를 신청해 볼 수조차 없다. 또한 비양육자가 감치를 피하기 위해 3기째에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은 감치 결정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감치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다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행명령이 감치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지에 대한 검토와 이행명령 결정 후 3기까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행명령과 감치는 공시송달의 경우 인정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한 결정을 받은 경우 실효성이 없었다. 특히 이행명령이 공시송달로 결정되는 경우는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기각되어 다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감치를 신청하고도 송달이 어려워 절차 진행이 늦어지거나 법원에서 취하할 것을 권하기도 하여 감치를 기대했던 양육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치에 대한 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송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절차들의 공시송달에 따른 효력 문제 및 송달 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육비를 정하는 시기에 양육비 산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나 양육비는 통상 당사자 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비양육자가 소득을 숨기는 등의 경우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 시 현실을 반영하고 지급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필요하며 동시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전 상담의 의무화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과거양육비의 경우,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그 금액이 대폭 감액되어 결정되었다. 과거양육비는 흔히 비양육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의 편에 서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 청구는 장래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이며,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경우 그만큼의 경제적 고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과거양육비를 산정하는 제대로 인정하는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고 법원은 지금보다 세심하게 과거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이행법 등은 더디게나마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마련된 법과 제도가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육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혜경 상담위원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률상담소(10)

제6차 가족법개정(2000~2007)

민법 제정과 우리 가족 관계의 중심에 놓여 남녀차별, 부부차별의 핵심조항이 되어왔던 호주제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선두에서 있던 상담소는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개정가족법의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혼과 부부갈등 등 가정문제의 현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의 미비한 점과 개선할 점을 통감한 상담소로서는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나타는 바를 보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3,40대의 이혼상담이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혼가정의 자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여성이 늘고 이들을 생계와 자녀 양육 그리고 사회 적응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이혼가정의 복리에 주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2001년 실시한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자녀를 양육하는 별거여성의 경우 83.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지역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더불어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부재산제에 댜한 검토와 제도화도 필요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앞서 급증하는 이혼에 대해 이혼 전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비롯해, 이혼 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등 이혼 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혼에 따른 책임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고 이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녀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상담소는 한부모가정의 자녀 복리를 위해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부부재산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했다. 이와 더불어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 전 상담제도 의무화를 위한 입법운동도 함께 진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행하였다.

이러한 가족법개정운동의 결과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6월부터 이혼숙력제도가 도입되었다.

상담소는 상담현장에서 읽어낸 문제를 바탕으로 면접교섭권, 친권의 문제 등을 주제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더 평등한 가족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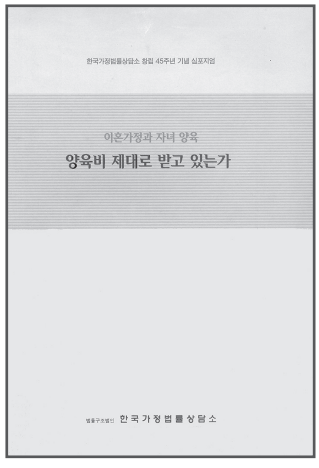

◀ 2001년 발간한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 자료집

◀ 2001년 5월 열렸던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 심포지엄

▶ 2002년 발간한 민법개정안 – 친양자 제도를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 2002년 1월 실시한 민법개정안 – 친양자 제도를 중심으로 –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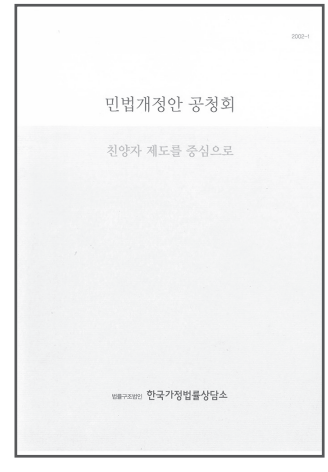

▲ 2002년 발간한 가족관계등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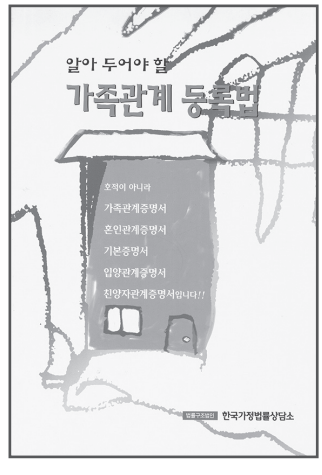

▲ 2011년 발간한 가족관계등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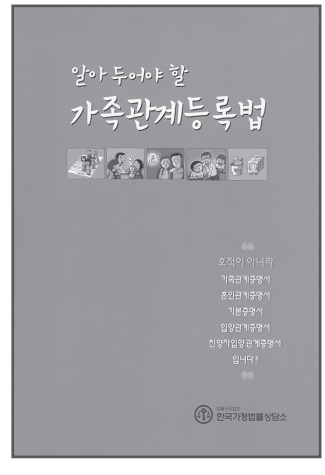

▲ 2015년 발간한 가족관계등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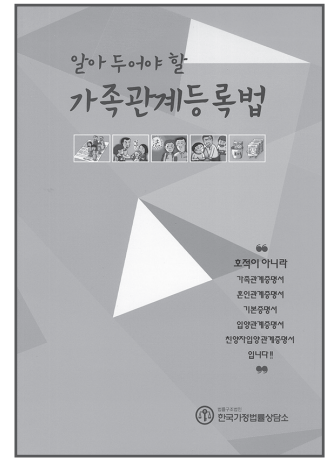

▲ 2018년 발간한 가족관계등록법

상담 통해 자신의 원가족과 성장과정의 문제, 잘못된 대화방법 깨달아 부부갈등 해결의 실마리 찾기도

사건번호 2019버1* 폭행/ 2019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자조모임 1회
부부상담 7회, 부부집단상담 6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9. 9. 6. ~ 2020. 3. 4.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18세)가 있다. 부부는 아내의 친정어머니, 고2 딸이 휴학 하면서 야기된 생활비 지출 문제, 가사에 대한 인식, 종교생활, 자녀양육 방식 등에서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2019년 2월 사건 당일 아내는 남편이 서류를 치웠다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고등어가 들어있던 비닐봉투로 남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남편은 이에 대항하여 그 비닐봉투를 빼앗아 아내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부부의 주된 갈등원인은 경제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였다. 부부는 상담기간 중 서로 같은 불평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편은 아내가 매일 종교활동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밥을 안주고 가사에 소홀하다는 불평을,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주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모멸감을 느낀다는 불평을 하였다.

상담에 참여하면서 부부는 원가족과 성장과정이 현재 자신의 가치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깨닫게 되었고, 잘못된 대화방법이 갈등을 심화시켜왔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남편은 자녀양육과 경제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왔던 방식을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휴학한 딸에 대해 용돈, 생활습관 등을 엄격하게 규제 하던 방식에서 유연하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딸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아내가 불만족하는 생활비 금액과 지급 방식을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경제문제에 대해 남편을 오랫동안 불신해왔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믿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약속 이후 남편은 아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지급하였다. 아내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용돈 지급 약속을 이행하였으며, 딸에게도 용돈을 주었다. 그러나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여전하자 남편은 다시 딸에게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그 외에는 남편의 제의에 따라 일요일 저녁에는 세 식구가 모두 모여 밥을 먹는 변화가 있었고, 부부간 대화도 원만하였다. 상담자는 아내에게 미성년 딸에 대한 마음 내려놓기와 지켜보기 등을 강조하였고 아내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전환이 되었다.

중간점검에서 남편은 아내의 태도가 - 특히 아침밥을 해주지 않는 등 -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였고, 상담자는 행위자의 상담 일정 중 남은 단계인 행위자 집단상담에서 딸 문제 및 아내와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하여 집단 구성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집단상담 2회 참석 후 상담을 종결하게 되었다. 전화 종결상담에서 남편은 사건 당시와 상담종결 시 부부관계를 모두 10점 만점에 6~7점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앞으로도 많이 이해하고 지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딸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받고 있었다. 아내는 상담 종결 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였고,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상담이 정상화되면 자조모임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9버9* 특수협박,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음주문제상담 3회, 교육강좌 6회, 자조모임 1회, 자조캠프 1회

피해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2회

부부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3회 등 총 27회 실시

상담기간

2019. 9. 16. ~ 2020. 3. 1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행위자에게는 전혼자녀(3녀, 25세, 21세, 20세)가 있다. 피해자는 2016년에 가정폭력 행위자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6개월간 본소에 위탁되어 상담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았고 서로 노력을 다짐하며 상담을 종결한 사실이 있다.

행위자는 2018년 11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나러 가는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치고, 목 뒤 덜미를 손톱으로 긁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으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뒷목에 겨누고 같이 죽어버리자고 협박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으며, 피해자도 함께 위탁되었다.

부부는 함께 음주를 하다가 대화 방식의 문제나 감정 조절 실패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건의 경우에도 행위자는 부모가 2019년에 4달 간격으로 별세한 일로 우울해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발생하였다.

초상담 1주일 전부터 행위자는 단주를 하고 있었다. LH 전세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초상담 1달 전부터 부부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되 매일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별거가 부부간 충돌을 줄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부모 별세 후 무기력에 빠져있기에 1일 1시간 이상 걷기를 과제로 부과하였다. 피해자는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절주와 일 열심히 하기를 정하였다. 부부는 정해진 계획대로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부부집단상담에 3회 참여 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휴강상태에서 상담종결기일이 되어 상담을 종결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관계 회복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는 사건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0점, 현재는 9점으로, 피해자는 사건당시는 0점, 현재는 7점으로 평가하였다. 남은 과제 내지 향후 바라는 바로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혼자녀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을 꼽았는데 피해자는 행위자의 바람에 부응하여 행위자의 전혼자녀들에게 잘하고 절주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부부는 상대방의 욕구를 잘 이해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와 같이 노력한다면 장차 더욱 개선된 관계로 지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혼 인 ❻

●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Q 남편이 퇴직한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어서 모든 저축 및 생활비 지출을 남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용돈으로 이십 여만 원을 받습니다. 저의 병원비와 약값에도 턱없이 부족하나 남편은 절대로 더 줄 수 없다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무시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매달 연금 삼백여만 원과 부동산 임대료 수익도 있고, 예금과 부동산 자산도 많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결혼 후 모은 것으로 제가 알뜰히 살림한 기여도도 있는데,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나눌 수 없는지요?

A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이것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한 것으로 재산취득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배우자라도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다면 부부재산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장기 별거인 경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에도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행 부부재산제는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진 아내의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Q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남편이 간경화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남편이 퇴원하고 한참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더니 빌려간 아내에게 받으라며 갚지 않습니다. 그 부부의 유일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집뿐입니다. 제가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832조). 일상가사채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등도 고려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일상가사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 즉 식료품,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차용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에 쓸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일상가사로 볼 수 있고 남편도 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그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어떻게 할까요」중에서

Q 저는 혼인기간 내내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의처증으로 고통받다 2020년 1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2020년 4월 24일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이혼 과정 동안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준 회사 동료와 이혼 후 좋은 감정으로 사귀게 되었고, 2020년 7월 28일 혼인신고 하여 2021년 2월 16일 남편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더니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즉, 전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300일 후, 현재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재혼 중에 임신한 현재 배우자의 친생자로, 현재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 이내, 전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나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동시에 현재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이 지난 뒤에 출생하여 현재 배우자의 자녀로도 추정되어 친생추정이 경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현재 배우자의 친생자로도 추정 받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자녀의 아버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한편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귀하는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다만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버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할 수 없고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해 두었다가, 판결의 확정 후 출생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10조).

* 상담 신청인의 이혼신고일, 혼인신고일, 자녀의 출생일은 실제와 다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공의 날짜를 사례에 맞게 설정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 모든 인터넷 상담의 경우도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권지연 상담위원

영화 이야기

어미

감독 박철수

출연 윤여정, 전혜성, 신성일

방송작가 홍경애(윤여정)는 고등학생 딸 나미(전혜성)와 함께 단란하게 살아간다.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연배의 최 교수(신성일)와 연애를 즐긴다. 어느 날 최 교수와의 데이트 때문에 나미를 데리러가는 시간에 늦어버린 경애는 허둥지둥 학교로 달려가지만,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나미는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어 사창굴에 팔려간 것이었다. 악전고투 끝에 경애가 간신히 딸을 찾아냈을 무렵에 나미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다. 경애의 간절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나미는 결국 자살에 이른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다큐 인사이트-모던 코리아〉의 '짐승' 편을 보면서 새삼 1980년대의 기억을 떠올렸다. 1980년대를 거쳤던 이들이라면 '봉고차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이다. 어느 정도는 현실에 기반 했고 또 어느 정도는 과장된 허구가 섞여 들어갔을 괴담 말이다. 유치원 꼬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이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온갖 주의 사항을 들었다. 밤길 늦게 다니지 마라, 큰 길에서도 늘 조심하고 봉고차가 보이면 도망쳐라, 낯선 사람과 절대 말을 섞지 마라 등등. '정조와 순결'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절이었다. 바깥세상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여성의 순진함은 근심의 대상이었고, 반대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여성의 경계심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질책의 대상이었다. 여성들은 (성적) 위험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것을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고, 아무것도 모를 만큼 순진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성적)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그것을 용감하게 막아내야 한다는 모순된 요구를 받던 시절이었다. 깨부수고 나올 만큼 용감해야 한다는 모순된 요구들이 여성에게 닥치는 대로 가해지던 시절이다. 1985년 극장가를 강타했던 영화 〈어미〉도 동시대의 익숙한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미〉의 각본을 쓴 사람은 바로 TV 드라마계의 거장 김수현 작가다.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즐겨 시청한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정말 번해 보이는 소재, 너무나 익숙한 장면으로 출발하지만 그 전개 과정과 결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라진다. 혹은,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가장 공

감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는지를 정확히 꿰뚫는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뻔하더라도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흡인력을 발휘한다. 〈어미〉도 마찬가지였다. 이 영화가 놀라워지는 지점은, 위에 기술한 줄거리 이후부터 시작된다. 하나뿐인 딸의 죽음 이후, 공권력의 힘을 빌릴 수 없는 극도의 불행 앞에서 엄마는 사적 복수를 감행한다. 딸의 납치범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하나하나 처단하는 것이다.

〈어미〉에는 분명히 당대 현실과의 타협이 존재한다. 나미의 추락의 일차 원인이 엄마에게 있다는 강한 질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엄마가 자신의 연애를 즐기느라 정신없어서 십 대 딸이 밤길에 혼자 걷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식이다. 그리하여 나미를 위한 경애의 복수에는 끝내 스스로를 처벌하는 자학적인 심리도 포함된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뜨는 자막은 다음과 같다. "어미는 새끼를 지켜야 한다. 환경이 아쉽다. 딸에게 용서를 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일차 원인은 엄마 경애가 아니라 인신매매범들에게 있고,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남성 소비자들의 수요가 너무나 많았던 당시 사회의 잘못이 더 크다. 하지만 영화는 사회 고발과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멈춰 서서, 불행을 사적으로 처단하는 엄마의 하드보일드한 스릴러로 뭉뚱그렸다. 여자의 불행을 엄마의 힘으로 되갚는다는 설정으로, 1985년의 여러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가끔 〈어미〉를 리메이크하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이렇게 흘려보내기엔 영 아까운 영화다. 물론, 1985년 작에 자주 등장하는 쓸데없이 에로틱한 장면(대단히 끔찍한 강간 장면이지만 그것을 눈요깃거리로 삼는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장면들)을 다 쳐내고 말이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동계방학 기간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실습을 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김 시 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루가 멀다 하고 데이트폭력, 보복살해, 친족 간 성폭력 기사가 쏟아집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로스쿨 진학 전,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에 고 이태영 박사님과 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돌이켜 보면 물 흐르듯 이끌려온 것 같습니다.

상담소의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법률구조기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법적 지식은 물론이고 내담자를 배려하는 태도, 대화의 기술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이곳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선생님들의 내공이 너무나도 컸기에, 열정적으로 임했지만 부끄러운 순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꼭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이 지금에야 마음 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을 대할 때에는 어렵고 좁은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개정된 가정폭력관련법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끊임없는 공부 등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실무수습 첫 날,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백인변호사단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의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실무능력을 갖춘 뒤 백인변호사단에 가입하여 가정법률상담소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힘쓰고, 미래에 백인변호사단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따뜻하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혜 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떨리는 실무수습 첫 날 팸플릿에 적혀있는 작은 문구하나가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2주간의 실무수습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법률상담과 입법운동, 교육사업, 가족상담 등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이 결국 "각 가정들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실무수습 전체를 돌아보니, 참관했던 법률상담과 검토했던 법률구조 기록 하나하나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닌 한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상담을 참관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 가정의 문제를 법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의 어려움을 배웠고, 법률구조 기록을 읽으면서 해당 가정을 위해 무엇이 최선이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소장 작성 과제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과제 내용은 총 3가지로 이혼 등 소장, 부동산 가

압류 신청서,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를 안내해드릴 수 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부분들을 서면으로 구체화해보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소장 · 신청서 · 추가적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사사건의 특수성은 그 답이 꼭 하나로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당사자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상담을 참관하면서 마주한 내담자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분노, 자신의 삶의 경제적 안정 등 주된 목적에 따라 다른 답을 찾아야했습니다. 때로는 내담자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담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원하는 바를 찾아내시는 상담위원님들의 접근방식을 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무수습을 통해 배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공감과 경청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와 필요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적정한 거리두기와 조금은 날카로운 질문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심포지엄 자료들을 열람하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에 대한 심포지엄 자료들을 통해 최근 법원의 경향, 양 측의 주장과 근거,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 등을 공부하며 기존 법체계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보다 나은 법체계를 위한 비판적 검토를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은 개인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수습을 하며 그 땅을 보다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모든 분들이 진심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모든 가정이 각자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 역시 학교로 돌아가 이곳에서 느낀 다짐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 송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오기 전,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가정의 모습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발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학이 전공인 덕에, 추상적으로나마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을 떠올리며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습 중 수화기 너머로 마주한, 실제 대면한 사람들의 상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이혼은 굴레를 벗어던지는 새로운 시작일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 보호를 위해서 다른 부모로부터의 접근금지가 필요했습니다. 저를 더욱 속상하게 만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법적 절차는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악을 면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이들을 상담소에서 만날 수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소에서 배포한 '어떻게 할까요?',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생활'을 읽으며 다양한 사례 및 가족법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간단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드리면서 실습에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상담소에서 보고 들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미혼부 출생신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두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왔습니다. 사랑이 법이 생긴 이후로, 아이 어머니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부임을 증명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 인적사항을 아는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없는' 아이가 되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출생신고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담소는 제가 겪지 못했던 사회의 단면을 직접 보게 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법률 구조 서류의 초안을 작성해보고 방문 상담을 참관했던 과정들은 제가 더욱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던 실습 기억을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며, 학기 중에도 상담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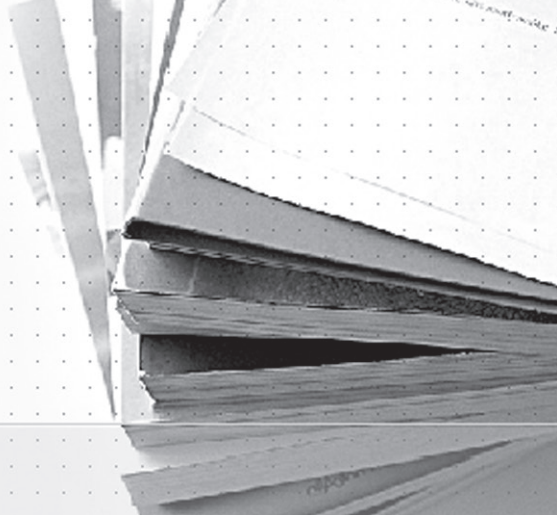

파친코

이민진 지음, 이미정 옮김

문학사상, 2021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강렬한 서사만큼 강력한 시작이었다. 한참 이 말을 되새기느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다. 양진, 선자 모녀와 선자의 아들들 노아, 모자수 형제 그리고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에서 시작해 1989년 오사카에서 끝나는 이 소설의 시작이었다.

"잘 들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아. 나 같은 조선인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달라진 게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공포에 떨고 있어."

두 권으로 이루어진 소설의 2권 중간 부분에서 자이니치 3대에 해당하는 모자수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일본인 형사 하루키에게 하는 말이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자이니치들의 삶에 대한 요약이다. 모자수는 학교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옥상에서 뛰어내린 조선인 중학생의 죽음을 두고 괴로워하는 일본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본인도 다 겪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계 1.5세인 미국 작가 이민진은 예일 대학 3학년이던 1989년 일본에 살았던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자이니치'라는 용어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후 30여 년에 걸쳐 이 소설을 썼다.

"고생이라, 선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신물이 났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인가? 선자는 노아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고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자신이 물처럼 들이마셨던 수치를 견뎌내도록 가르쳤어야 했을까? 결국 노아는 자신의 출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고생이 닥칠 거라고 말해주지 않는 게 엄마들의 잘못일까?"

인생은 대개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지만, 역사의 부침 속에서 이리저리 내팽개쳐진 개개인의 삶은 표현하기 힘든 장엄한 비극이다. 비록 역사는 이렇듯 사람 하나하나의 삶을 비틀어놓고 도도히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기에 또 이렇게 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파친코'라는 책 제목은 일본의 기간산업이라는 자동차 산업보다 규모가 크고, 샐러리맨부터 장바구니를 든 주부까지 모두 드나드는 그리하여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경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 많은 부분을 자이니치가 담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일본 사회에서 자이니치의 존재를 설명하기에 더 없이 적절하게 보였다.

이 책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꼭 읽어야할 책으로 추천해서 화제가 되었고, 뉴욕타임스가 '올해의 책'으로 그리고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작으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다.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부산 영도를 배경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이들이 나오는데 외국 소설을 읽는 듯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낯설었지만 – 번역서이니 당연하게 – 이야기 자체의 흡입력이 그러한 어색함을 금방 잊게 하였다.

1992년 일본에서 주최한 어떤 회의,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통역으로 만났던 재일교포 두 분과 그 분들과 더불어 만났던 교포 2세, 3세들의 모습이 기억난다. 전차 안에서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은 중년의 일본 아저씨가 강코구에서 왔냐고, 잘 있다 가길 바란다고 웃으며 말했는데 날카롭게 반응하던 두 분의 모습이 아프게 되새겨졌다. 저런 일본인들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일본행, 분단된 조국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자이니치로서의 처지, 안타깝고 눈물겨웠지만 내 이해도 지극히 표피적인 것이어서 그 분들의 날선 반응에 속으로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응하시나, 그냥 술 취한 아저씬걸(술 취한 아저씨란 동서고금 다 싫은 법이니까)'했던 것이 아프게 반성되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신귀성 선배, 김영호 선배.

이숙현 편집부장

2021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30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정관 중 지정기부금단체 관련의 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날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모든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 HOW」 유튜브 영상서비스 시작

본 상담소는 2020년 11월 6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가정법률상담과 관련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월 26일부터는 「가정폭력 HOW」라는 제목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 등을 위한 영상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제공한 동영상은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부부 존중 대화법" "부모자녀 존중 대화법" 등 3편으로,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대한 이해와 비폭력적인 대화법 실천 등에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HOW'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본소에서는 향후에도 가정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가정폭력예방지침서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개정, 발간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정폭력예방지침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그 중 2003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온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의 개정판을 3월 31일 발간하였다. 초 발간 이후 28번째 발간이며 개정3판에 해당하는 이번 발간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20. 6. 9. 시행, 2020. 6. 9. 일부개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1. 21. 시행, 2020. 10. 20. 일부개정)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본 지침서는 본소를 방문하는 내담자와 전국업무협력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3.3.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3.8. 강서지역자활센터 - 신용회복 및 가족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3.10. 용산구청 - 위기가정 사례개입을 위한 법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3.10. 강서지역자활센터 - 신용회복 및 가족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3.26. 동작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2021년 3월 상담통계

총 건수 6,561				
법률상담 (5,791)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순회
1,138	4,522	127	1	3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31	62		77	

• 인터넷 정보 이용 24,022

2021년 3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56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791건(88.3%), 화해조정 631건(9.6%), 소장 등 서류작성 62건(0.9%), 소송구조 77건(1.2%)이었다.

법률상담 5,79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4%→0.5%), 부부갈등(3.1%→4.1%), 이혼(22.2%→26.9%), 미성년후견(0.6%→0.7%), 성년후견(2.9%→3.2%), 가사절차(6.7%→6.9%), 가사기타(7.9%→1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2%→0.5%), 파산(1.4%→2.1%), 개인회생(0.3%→0.4%), 민사절차(0.0%→0.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간통(0.0%→0.1%), 성폭력(0.0%→0.1%), 형사기타(0.5%→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79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38건(19.7%), 전화상담 4,522건(78.1%), 인터넷상담 127건(2.2%), 지상상담 1건(0.0%), 순회상담 3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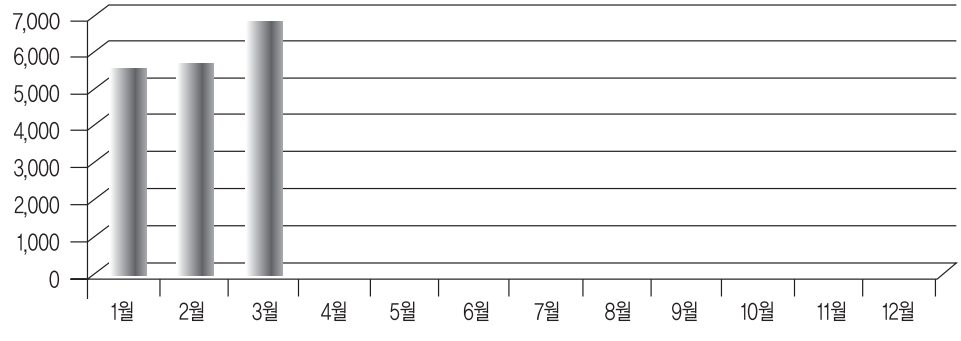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3월 3일, 24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사건 조정에 참여하였다. 대한민사법연구학회 창립30주년 기념 학회지에 '영국 이혼법의 시사점' 논문이 게재되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5일 제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회의(The Kyoto Congress) 온라인 사전행사로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주관한 「가정폭력과 처벌 : 가해자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동아시아의 가해자 프로그램의 실천과 갱생을 향한 제도 설계-웨비나에서 "한국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의 실제"라는 주제로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11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본 상담소 2020년도 이혼상담 통계와 관련하여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하였다. 25일에는 사법연수원의 2021년도 「가정보호· 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에서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상담의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오프라인·원격연수 병행). 3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교육」에서 "가정폭력처벌법 및 주요 결정례"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민지, 김선경, 김수정, 김준호, 김지우, 김지윤, 김혜원, 김효진, 류지원, 문예빈, 박성환, 박지희, 신수민, 예정은, 오지현, 윤채은, 이상은, 이송현, 이용안, 이종원, 임지윤, 장선우, 장성윤, 전우인, 정수나, 정유나, 조예람, 조예진, 조주현, 최세은, 한봄이, 한승연 님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권지연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최은아, 강영열, 장인복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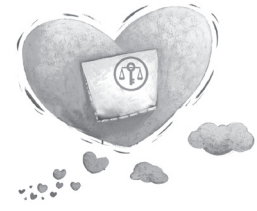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미군 남편과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61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세)와 미군이었던 피고는 1986년 12월경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이다. 1987년 2월경 미국으로 함께 이주해 루이지애나 군부대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1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자녀를 원하는 피고와 불임인 원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몸싸움까지 번지기도 했다. 결국 미국의 루이지애나 미군부대 내 법원에서 1988년 4월 이혼을 했으며, 원고는 피고와 헤어져 텍사스에서 식당일, 청소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몸이 아프고 가족이 그리워 2019년 1월경 한국으로 돌아왔다. 원고는 이혼 후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6.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과도한 생계비지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345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9세)은 2011년경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배우자가 '베체트병' 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으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신청인 혼자 힘만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였다.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일하였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비와 아픈 배우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2018년경 더 이상 이자변제를 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가계형편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이마저도 이어나갈 수 없었고, 2020년 4월경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임신을 하면서 앞으로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은 170만 원에 불과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청인은 병원비를 비롯한 생계비가 정기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3. 2.)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526
담당 : 전혜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1세)과 피신청인(남, 52세)은 1994년 1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4세)을 포함한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6년 8월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0만 원을 매월 30일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인 탓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무관심했고, 이혼 후 15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양육비가 2,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울산가정법원 2021. 2. 1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호협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6. 8. 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500만 원을 분할하여 2021. 3. 1.부터 25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명의도용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60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6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시기에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일거리가 줄면서 무직상태가 길어진 신청인은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인 앞으로 채무독촉장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신청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지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명의도용사기를 친 것이었다. 억울하게 4,000만 원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된 신청인은 당시 오랫동안 무직상태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마땅한 거주지마저 없어 길거리 노숙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경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였고, 현재까지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은 기초노령연금과 주거급여비를 합한 월 평균 50만원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크게 늘어 현재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 이에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0-692
담당 : 김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1세)는 1987년 3월경

혼인하고 2006년경 협의 이혼한 이후, 2014년경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이후 식당, 노점, 가정 파출부, 농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산악회 모임을 다니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열중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 2020년 2월 경 원고는 도가 지나친 피고의 위협과 욕설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광주가정법원 2020. 12.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21. 1.부터 2021. 5.까지 월 4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분할하여 지급할 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원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798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7세)와 채무자(남, 47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9세, 16세)을 두었으나, 2018년 9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채무자에게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용돈을 요구하면 조금씩 주는 정도였고,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1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